

예 산 총 칙

2025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25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1,319,692,190	39,590,766
일반회계	1,319,692,190	39,590,766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"해당없음"

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"계속비 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4,842,083천원(일반 4,000,000천원, 재해·재난목적 30,842,083천원)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74,6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